
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」 제정 공고 주요내용

□ 제정 취지

- 보건복지부 고시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 제5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사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,
 - ‘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’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출과정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, 그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자료 제출 근거 마련(공고 제2조)
 - 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 외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
- 전용 시스템을 통해 심사자료 제출 시 사용할 수 있는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명시(공고 제3조 내지 제5조)
 - ※ (심사자료 제출 전용 시스템) HIRA e-Form시스템, HIRA e-Image시스템

□ 시행일자

- 공고한 날부터 시행